

국내산 축산물이력제 신규이행대상자 안내!



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위해,
2020년 1월 1일부터 축산물이력제 이행대상자가 확대됩니다.

국내산 축산물이력제 신규이행대상자는요?

- 영업장 면적 700㎡ 이상인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
-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자
-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신판매업소

신규이행대상자 준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?

- 판매하고 있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*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게시하여야 합니다.
 -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 기록하고 기록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- *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? 국내산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계란(가정용), 수입산 쇠고기, 돼지고기 (가공육, 양념육, 소시지류, 베이컨류, 부산물은 이력관리 대상이 아닙니다)

언제부터 이행하면 되나요?

- 2020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.(수입산이력축산물은 기시행 중)
- ※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(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) 개정일 기준

축산물이력번호는 어떻게 표시하고 게시하면 되나요?

-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업자는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 (뒷면 참조)
- 이행 대상: 식육포장처리업자,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,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, 식품접객 영업자,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자, 통신판매업자

관련 법률 :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(제18조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)

제도관련 문의사항

- 홈페이지 : 국내산 축산물 이력제 www.mtrace.go.kr / 수입산 축산물 이력제 www.meatwatch.go.kr
- 전화문의 :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1577-2633 /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 1688-0026



농림축산식품부



농림축산검역본부



축산물품질평가원

이행 대상자



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
(영업장 면적 700㎡ 이상)

표시기한

이력번호는 공급받은 일자기준 7일 이내 모두 게시(상품을 소진한 시점까지)

표시방법

● 게시판 또는 인터넷 게시(보기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기)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① 메뉴판 또는 메뉴게시판 | ⑤ 별도 게시판 또는 풋말 |
| ②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| ⑥ 인터넷 홈페이지
(해당 영업장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) |
| ③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
(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) | ⑦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
(축산물 위생관리법) |
| ④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| |

☑ 위 표시방법 외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

- ① 계산대 ② 출입문 주변 ③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

☑ 영업자가 공급받은 축산물 모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

음식으로 판매·제공할 때 게시해야 합니다.

표시기한

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게시 또는 표시

표시방법

● 게시판 또는 인터넷 게시(보기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기)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① 메뉴판 또는 메뉴게시판 | ⑤ 별도 게시판 또는 풋말 |
| ②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| ⑥ 인터넷 홈페이지
(해당 영업장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) |
| ③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
(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) | ⑦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
(축산물 위생관리법) |
| ④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| |

※ 단, 인터넷 홈페이지 등(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명이 포함된 곳만 해당)을 통하여 이력번호를 조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게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.

표시기한

전자매체의 경우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

표시방법

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'이력번호 표시 제품임'을 고지하고 배송상품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

표시문구 예시 '이력번호 표시제품임', '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이 표시됨'

☑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

원산지 표시정보 주위에 자막, 별도 칸 등을 이용하여 '이력번호 표시 제품임'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

☑ 문자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

설명 방법 :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상품 설명과 동일하게 하고, 반복적으로 설명

설명문구 예시 본 상품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,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시됩니다.



통신판매업자

※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축산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다 표시하여야 합니다.